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순 서

□ 5분 자유발언 : 4명

- 김홍섭 의원 :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 김향란 의원 : 「2026 거창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감악산 관광 교통 대책 제언
- 표주숙 의원 : 폐채석장 방치, 주민안전 위협. 안전대책 조치 촉구
- 신미정 의원 :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에 군정을 집중하자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보고안건 : 15건(조례안 10, 일반의안 5)
- 보 고 자 : 김향란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보고안건 : 9건(조례안 6, 일반의안 3)
- 보 고 자 : 김홍섭 부위원장



의 사 일 정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3.(월) 10:00>

[illegible]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11. 03. 10:00)

5 분 자 유 발 언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김 홍 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로 구성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물고, 이웃과 대화하며, 문화를 느끼는 공간에서 비로소 도시의 가치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거창군의 공공 벤치는 위치가 산발적이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률이 낮고, 일부는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벤치 하나가 도시의 품격을 바꾼다’는 말처럼, 이제는 벤치를 단순한 휴식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인프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주민이 머물고, 소통하며, 휴식할 수 있는 도시, 즉, 사람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벤치의 재배치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방치된 벤치를 주민 생활 동선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조경과 그늘, 조명을 함께 배치해 쾌적한 쉼터형 디자인으로 바뀌야 합니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스마트 쉼터형 버스정류장’을 도입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와 성동구 등에서는 벤치를 중심으로 조명, 작은 화단, 차양막을 설치한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을 작은 쉼터로 바꿨습니다.

해외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공공 에너지회사 ‘헬렌(Helen)’이 태양광 충전 기능을 갖춘 벤치,

이른바 ‘솔라벤치(Solar Bench)’를 설치해 주민이 앉아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도 ‘수파(Soofa) 스마트벤치 프로젝트’를 통해 Wi-Fi와 충전, 환경센서 기능을 갖춘 벤치를 공원과 광장에 시범 운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영덕군과 거제시 등 일부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과 충전 기능을 갖춘 ‘솔라벤치’를 도입하거나 설치를 추진중이며, 국내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벤치가 공공장소에 시범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벤치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머무름과 소통을 유도하는 생활 거점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벤치와 지역 문화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벤치를 단순한 휴식 시설이 아닌 주민과 예술이 만나는 문화와 소통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도쿄의 일부 구에서는 작은 광장형 벤치 주변에서 플리마켓과 거리 공연을 열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 등 유럽 도시들은 벤치 옆에 소규모 공공미술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거리 풍경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예술인과 청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 문화 프로그램’을 벤치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군민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벤치 관리와 운영의 체계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관리 체계가 없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을 비롯한 유럽 도시들은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벤치를 도입하여 이용률과 유지보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주민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공공시설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구조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주민 참여형 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시설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하기 쉬운 맞춤형 벤치 설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단순히 시설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체류시간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과 문화공간이 활성화 되며, 공공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효율성까지 향상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점은, 2026년 거창군 청 앞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에 ‘스마트벤치’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군민이 머물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형 생활 쉼터 모델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작은 벤치 하나가 군민의 일상을 바꾸고, 머무름이 문화를 만들며, 그 문화가 거창의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이제 거창군이 사람 중심, 문화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11. 03. 10:00)

5 분 자 유 발 언

「2026 가창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감악산 관광 교통 대책 제언



김 향 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 향 란 총무위원장입니다.

가을을 만끽할 틈도 없이 며칠 후면 벌써 입동입니다.

가을걷이와 갈무리에 분주한 수확철이지만

올해 가을은 유난히 잦은 비로 인해 수확 직전에

쓰러진 벼가 썩고 사과 낙과 발생 등으로 농민들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구인모 군수님께서

피해 현황 파악과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만큼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 청취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인 거창방문을 통한

관광업 발전을 위해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도 군정 계획의 상당한 비중은 거창 창포원 국가정원 지정 염원을 담은 거창방문의 해로 설정하고 군정 역량을 모두 집중하여 전 실과 사업소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콘셉트를 사계절 힐링되는 곳 거창으로 떠나는 감동 여행지 만들기로 잡고 치유 힐링의 도시 브랜드구축과 정원 도시 이미지 확산을 통해 방문객 1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올해 경우 방문의 해 선포식과 관광콘텐츠 강화를 내걸고 전국적 홍보 마케팅 강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창포원을 거점으로 생태 문화 관광코스 연계와 치유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치유도시 브랜드화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과 그동안 구인모 군정이 추진한 동서남북에 만든 관광시설과 사계절 축제 콘텐츠로 365일 즐기는 입체형 관광도시 거창을 홍보한다는 계획은 지역 활력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거창은 1천 미터가 넘는 산이 이십여 개가 넘게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단 한 방울의 물도 허용하지 않는 천혜의 청정도시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학교에서 배출한 인재들과 서북부 경남의 중심 군답게 다양한 관공서를 갖춘 살기 편한 곳입니다.

규모화된 거창읍이라는 중심지는 적절한 도심의 기능을 해주고 도시의 장점과 농산촌의 장점을 모두 살린 곳이라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해 갈수록 힘든 도시인들은 거창 같은 농산어촌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조상들이 물려준 자연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관광 트렌드 분석을 통한 관광콘텐츠 고도화 방향으로 지역의 먹거리 발굴 노력은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조직 개편에 이르게 된 것이라 봅니다.

관광산업은 방문객에게 교통 먹거리 숙박 오락 따위를 제공하는 산업인 만큼 동서남북에 조성한 관광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할 교통 대책과 감악산 꽃별 축제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농경지로 이동해야 하고 병원 가기 위해 시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스타와 구절초와 노을을 보면서 하루 즐겁게 힐링하려고 힘들게 시간을 낸 관광객들의 불편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며 이미 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관광인프라는 무엇보다 교통이 원활해 관광객들이 이동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제 기간만이라도 감악산을 중심으로 신원면, 남상면, 남하면에 사유지를 임차해서라도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셔틀 루프를 도입하여 연수사 위쪽부터 무분별한 차량 진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감악산의 아침은 일출, 낮에는 산림이 주는 청정한 공기 마시며 걷는 무장애 데크와 잘 가꾼 아스타, 아스타와 억새 구절초를 호위하는 풍력 기둥과 날개들, 해질녘은 감악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물들이는 노을, 밤은 크리스탈 보석이 박혀있는 하늘 향해 손 내밀게 하는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자산이 교통 체증 문제 하나로 오명을 쓰고 빛이 바래서야 되겠습니까?

감악산의 32만명 방문이라는 호재가 2026년 거창방문의 해 성공을 낳고 교육도시로서 기존 이미지도 더 부각 되어 활력 넘치는 거창이 되길 염원하면서 오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11. 03. 10:00)

5 분 자 유 발 언

**폐채석장 방치, 주민안전 위협
안전대책 조치 촉구**



표 주 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위천면 상천리 일원의 폐채석장
장기 방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과거 배왕석재 채석장으로 2011년 허가 종료,
2017년 자력 복구 포기 이후 복구 주체가 거창군
으로 넘어왔습니다.

28,225m²의 복구 면적에, 복구에치금 9억 5천여
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나, 실제 복구 소요비용은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1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현장은 수십 미터의 절벽, 대량의 정체수 (암반호수), 붕괴 위험 석벽 등으로 실족·익수·산사태 위험이 상존합니다.

인근 상천리·강남마을 주민들께서는 “가까이 가기도 두렵다, 하루빨리 복구하라” 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간 초대형 석불상 조성, 석분 슬러지 매립, 레저·암벽등반 ‘챌린지밸리’ 등 활용 대안을 검토해왔으나 안전·환경·주민 수용성을 넘지 못해 모두 좌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활용은 무산! 복구는 표류! 현장은 방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인모 군수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복구의 주체는 거창군입니다.

군민의 생명·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복구토 확보가 어렵다” , “기준이 엄격하다” 라는 사유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행정을 군민은 무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 집 앞, 내 일이라는 자세로 가시적 조치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즉시 실행과 책임 있는 추진 체계를 촉구합니다.

첫째, 절벽 상단 출입통제 펜스, 야간 경광 · 표지등, 다국어 경고판을 즉시 설치하고
암반호수 구역은 부유 차단막 · 부표로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등산 · 채취로 폐쇄 및 우회로 안내를 병행하십시오.

둘째, 복구에치금 집행계획을 고도화하고
부족분은 추경 · 특별교부세 · 도비 및 산림청 · 환경부 공모사업 연계를 통해 충당하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해 복구예치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대표, 지반·수리·환경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상설 TF를 즉시 구성하여 설계·시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 주민 동행·검증을 제도화하십시오.

분기별 공개 점검·결과보고회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넷째, 대체 활용안 구상은 위험 저감과 최소한의 안정화가 검증된 이후에, 환경영향·안전성 기준을 전제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복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계획 없는 검토! 일정 없는 검토! 책임 없는 검토! 는 또 다른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본의원 또한, 예산·제도 개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끝까지 챙기고 점검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행정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11. 03. 10:00)

5 분 자 유 발 언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에 군정을
집중하자**



신 미 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 미 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거창군 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저는 이 자리에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거창군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가지리 더샵 인근과 대평리 새동네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구성이 추진 중인
상황으로, 거창군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도심
공동화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더샵 아파트 인근에는 소규모 건축 기반 공사가 시작된 곳도 보이는데, 만약 다른 아파트마저 준공이 된다면 이곳은 분명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 외곽이 계속 팽창하면, 상권은 인구가 많은 곳인 외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심은 비어가고, 도심이 낙후되어 ‘도심 공동화 현상’ 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도심 공동화’ 현상은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낙후된 도심에서는 5대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도심이 비면서 치안과 생활환경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전국 여러 도시에서 확인된 예고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 정책은 여전히 외곽으로의 확장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송정택지 지구단위 변경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의원의 생각과 반대로 송정택지지구에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면, 원도심은 물론 상동 상권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거창군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이전으로 인한 변호사 사무실 등의 이전’ ,
‘의료복지타운 내 상업지구 분양 계획’ ,
‘달빛내륙철도 역사 주변 개발’ 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거창군의 모습을 바꿀 대규모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권까지 외곽으로 이전시켜 원도심은 더욱 외면을 받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하동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전반에 도심 외곽으로의 팽창을 염두에 두서는, 깊어가는 도심 공동화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창군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인 69개 지역에 포함되는 극심한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2024년 1월 4일 기준 인구는 5만 9,993명으로, 6만 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 10월 28일 현재 5만 9,179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예견하고 도시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일은 거창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도심 공동화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책을 재점검해 외곽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의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하나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책을 세울 때부터 도심 공동화를 방지할 방안을
고민하고, 도심 내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원도심이 살아야 거창이 삽니다.

거창의 미래는 원도심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289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2025.11.3.)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1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문화예술과	1
2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9
3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5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19
5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23
6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교육과	28
7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34
8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37
9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40
10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48
11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	인구교육과	53
1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56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경제기업과	64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문화예술과	67
15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70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10. 10.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에는 화강석 조형물을 비롯해 지역을 상징하는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있음에도 관리 체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제외(안 제1조~제3조)
- 2) 건립대상 선정기준(안 제4조)
- 3) 사전 타당성 조사(안 제5조)

- 4)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의무 등,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제9조)
- 5) 공공조형물의 관리,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최근 공공시설 내 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 유지관리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난립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 안 제1조 목적에서 안 제11조 공공조형물의 활용까지 총 11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는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경관 보호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됨.
- 안 제2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가 잘 이루어져 있고, 공공조형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함.
- 안 제4조는 공공성, 역사성, 안정성, 주민 공감도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형물 설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상징조형물에 대해 역사적 고증과 주민 공감도를 요구하는 점은 사회적 논란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거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전문가, 주민대표, 의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 회의 때마다 위촉하는 방식은 유연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적 번거로움과 연속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로써, 위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별도로 두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규정하여 유지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였으며, 활용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 조항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공공조형물의 해체·이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보완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공청회, 설문조사 등),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건립계획서, 관리대장 등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공조형물이 대부분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훼손 또는 파손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형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서 철저한 점검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 다.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거창군을 포함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전시나 홍보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건립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역사적 사실과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5.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6. 유지관리의 용이성
 7. 행정기관이 건립주체일 경우 예산의 적절성
-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교육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의 공감도
4. 출생지, 활동지역, 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 관련성

제5조(사전 타당성 의견서) ① 군수는 건립주체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제4조에 따른 적정성
3.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와 설치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원 1명
-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 대표

라. 거창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시민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제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총괄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거창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 작성 등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0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가. 제안이유

-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관 협력 위원회로 구축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9조~제16조)
 - 1) (현행) 군정조정위원회 대행
⇒ (변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적 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2)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 3)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 간사, 운영세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어긋남이 없음.
- 기존에는 군정 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능을 대행했으나, 개정안은 별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심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화 및 독립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의제4항에서 시민사회단체, 학계, 청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11조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안 제12조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 및 위원 자격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성범죄 관련 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

가능하도록 명시한 점은 공공기관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조치라고 생각됨.

- 안 제14조에 회의 소집, 의결 요건, 간사 지정 등 운영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운영을 체계화하였음.
-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청년단체 언급은 있으나, 성별 균형이나 장애인 등 포용적 구성에 대한 명시로 성별과 세대의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
- 회의록 공개, 군민 참여 절차 등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항이 추가된다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제17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 및 관련 부서의 국장이나 소장·과장·담당관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0. 0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및 설문 참여 주민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개선함(안 제8조)
-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 행정지원을 정함(안 제17조·제22조)
- 현행 제안자 중심의 포상 범위를 설문 참여자까지 확대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보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 안 제8조제3호의 “우선 검토할 수 있다”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로 변경함으로써, 주민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가 단순 권고에서 사실상 의무로 강화하여 예산편성 시 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음.
- 안 제17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을 신설한 것은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조치로 보여지며, 연구회 구성 및 운영을 군수에게 위임하되 내부 규정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18조의 참조 조항 수정(제6조제2호 → 제6조제4호)은 법령 체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개정으로 보임.
- 안 제21조제3항 신설로 주민제안 및 설문 참여자에게 상품권 지급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었으나, 지급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2조에서 “연구회”를 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해 행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새롭게 신설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였으나,

- 회원 수, 자격 요건, 임기 등 기본 틀에 대한 명시가 없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 또한, 연구회와 기존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정립도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검토할 수 있다.”를 “검토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구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제6조제2호”를 “제6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을 “(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연구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연구회로 본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0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재훈]

가. 제안이유

-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도민체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 정원을 신설함.

나. 주요내용

1) 한시기구를 신설함(안 제29조)

가) 분장사무: 도민체전 개최, 경기운영, 시설정비 등

나) 존속기한: 2028. 12. 31.

2) 한시정원을 신설함(안 제30조, 별표 5)

가) 한시정원 총수: 일반직 8명

(1) 5급 중 1명

(2) 6급 이하 중 7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 정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도민체전이라는 대규모 행사이면서 4개 군 공동 개최에 따라 행사를 준비·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으로써 기구의 일시성과 예산·인력 운용의 계획을 확보한 점은 타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4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함.
- 안 제29조에서 기획단의 사무를 개최, 경기운영, 시설정비 등 기획단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체육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 경기 운영 및 체육시설 정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인력 구성 시 관련 직렬의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9조·제3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제29조(한시기구)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민체전기획단을 두며, 도민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민체전 개최
2. 경기운영
3. 시설정비 등

제30조(한시정원) 도민체전기획단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0. 0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재훈]

가. 제안이유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생략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조의 제목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5조~제7조)
- 표창장의 제외 신설함(안 제5조의2)
- 공적심사 절차 개선함(안 제9조의2, 제11조)
- 포상의 취소 신설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생략 대상을 명확히 하고 포상 취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 안 제2조 개정으로 포상의 원칙과 이중 포상 금지를 명시하여,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 안 제5조의2 신설로 징계 이력자, 불문경고 대상자 등 부적격자의 포상 대상 제외를 명문화함으로써, 포상의 신뢰성과 도덕적 기준을 높였으나, “군수가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포괄 규정은 유연성은 있으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요건”이라는 표현으로 조문 제목을 통일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가독성이 향상되었음.
- 안 제9조의2에서 상장에 한해 심사 생략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실무 간소화와 행정 효율성을 반영하였음.
- 안 제11조에서 포상 취소 및 환수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전반적으로 포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의 원칙) ①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같은 공적이나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5조의 제목 “표창장”을 “표창장의 요건”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표창장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의 제목 “감사장”을 “감사장의 요건”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상장”을 “상장의 요건”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해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제5조의2에 따른 표창장 제외 대상에게 수여된 경우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0. 0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가. 제안이유

-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도민 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도민연금 운영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5조)
- 정보제공 및 처리, 위임 및 위탁, 준용을 정함(안 제6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도민 연금의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 안 제1조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를 위한 도민연금 제도 운영 및 지원이라는 목적이 명확하며, 고령화, 정년 이후 소득 단절 문제 등 사회적 필요성에 부합함.
- 안 제2조에서 정의한 도민연금, 소득 공백기 및 노후준비에 대한 용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정의를 인용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3조에서 제도의 지속적·안정적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4조에서 가입 대상, 신청 절차, 부담금 및 지원금 등은 경상남도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위 조례와의 정합성 유지로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나, 세부 운영 기준이 군 조례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주민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도 조례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 안 제5조에서 군수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구체적 범위나 기준은 미비하므로 예산 편성 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에서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필요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보 제공 및 위탁 시 법적 절차(동의, 목적 명시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에서 운영 및 정보 처리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안 제8조에서 미규정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도 조례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 방지 및 해석 기준을 제공하였음.
-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군비는 연평균 약 52,9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47명씩 추가되므로 예산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도 전체 10만 명 유지 계획에 따라 거창군의 부담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도민연금을 가입을 통해 군민들에게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연금”이란 다음 각 목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소득 공백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
나. 노후준비(「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2. “지원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의 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에 필

요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관련기관이나 위임·위탁받은 자(이하 “위임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위임자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도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
2. 제6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조례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0. 0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가. 제안이유

-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관내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나이를 상향함(안 제3조)
(현행) 34세 이하 ⇒ (변경) 45세 이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 청년층 중심의 기존 지원대상(34세 이하)을 중장년층까지 확대(45세 이하)함으로써 지역 내 인력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며
- 우선지원 기준 도입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실질적 필요 대상자 중심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세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이번 조례 개정으로 35~45세 노동자도 포함되어 실질적 수혜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근무자 우선지원으로 기업 내 인력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지원 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 등”을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4세”를 “45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애향장려금은 장기근무경력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0. 0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가.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선함으로써 그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지역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개별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원대상 정비함(안 제5조)
 - 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청년, 취업 취약계층 삭제
 - 나) 근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5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6호
- 2) 용어나 문장 정비, 법령 재기재 삭제함(안 제1조·제2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안 제1조를 보면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였고, 목적의 구체성과 포괄성이 강화되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2조에서는 단순한 일자리 연결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질적 향상까지 포괄하여 정책 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5조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을 삭제하였는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 의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청년의 기준이 모호해짐.
- 취약계층 범위 확대는 사회적 포용성 강화로 긍정적으로 해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업·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청년의 취업·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

7.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0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가.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 제정에 따른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사업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센터, 전담조직 및 전담창구를 정함(안 제8조~제10조)
-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내 거주민이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전달체계의 명확화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 것임.
- 통합돌봄에 관한 비용추계를 보면 주로 지원사업, 회의 운영,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비용 발생 요인으로 2025년의 경우 통합돌봄사업비 대비 인건비·운영비가 64%를 차지함.
-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 추계는 총 5년간 약 28.8억원이 소요되고, 연평균 약 5.76억원, 군비 부담률 약 70%, 도비 보조는 약 30% 수준이며, 매년 약 3~5% 수준의 점진적 예산 증가 추세임.
- 군비 부담이 높은 구조의 사업으로 통합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 및 성과 기반의 예산 운용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전담조직 구성, 지역계획 및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관리 방안 마련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통합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므로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창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른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

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

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합지원회의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군 업무 담당자

가.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다.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2.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에 따른 거창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지원협의체”라 한다)는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운영한다.

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통합지원센터) ① 군수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 대상과 상담
 2. 통합지원 대상의 지속적인 지역 거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통합지원
 3.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조직 및 전담창구)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과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1조에 따른 통합돌봄회의 및 통합돌봄센터는 제7조·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0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가. 제안이유

- 인구의 고령화와 구조 변화를 고려해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효행을 적극 장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가짐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함(안 제1조~제4조)

- 1) 4세대 이상 가정 ⇒ 3세대 이상 가정
- 2) 70세 이상 직계존속 ⇒ 80세 이상 직계존속

나.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의 세부기준·절차·서식 등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함(현행 제4조~제6조)

라.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함(현행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구조 변화를 고려해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 기존 조례는 4세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가족제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에서는 출생 및 입양으로 구성된 가정에 대해서는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가족 형태 다양성을 반영하였음.
-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 대상 가구수 증가로 인한 예산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총 5년간 2억 3,500만원, 연평균 약 4,7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정책적 효과 대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 본 조례안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개정안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효도수당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 범위에서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효도수당 지원의 대상은 효도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효도수당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 그 지원 대상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세대 이상 가정의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효도수당 지원 기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 이후 효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 가정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등록된 가정은 이 조례에 따른 효도수당 지급 대상 가정으로 본다.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0. 0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가. 제안이유

- 다양한 수요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 교육여건 개선 사업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거창군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 요

- 1) 근 거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2) 출 연 금 : 3,394백만원
- 3) 내 용
 -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665백만원)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169백만원)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250백만원)
-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60백만원) ※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기금 확대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26년도에 총 3,394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임.

○ 출연금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25년 편성액과 동일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요구액	주요 내용
계	3,394	
장학기금 확대	2,250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 기반 마련
장학사업 추진	665	원어민 영어교사, 국제교류 등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169	지역산업 연계 기술인력 양성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50	학비 부담 완화 및 인구 유입 유도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60	교육발전특구 사업 일환

○ 본 출연안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 인재 육성, 산업 연계, 인구 유입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법적·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 개선과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0. 0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① 가조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

1. 제안이유

가.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나. 공공형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확대 운영을 위해 숙소 마련은
필수적이며, 기숙사 건립을 위해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91-4, 91-5

2) 사업기간 : 2025. 10. ~ 2027. 12.

3) 사 업 비 : 31억원 정도(건축공사, 부지매입 및 부대공사 등)

4) 내 용 : 기숙사 건립(연면적 500㎡, 투룸형 10실 및 부대시설)

나. 취득 및 처분 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	소계	2필지		1,674	181,565	2026	
	토지	가조면 마상리 91-4	답	1,002	114,228		소유자 (문*인)
	토지	가조면 마상리 91-5	창고 용지	441	55,301		소유자 (동***협)
	건축물		창고	231	12,036		
처분	소계			231	12,036		철거 후 사업부지 활용
	건축물	가조면 마상리 91-5	창고	231	12,036		

다. 추진경과

- 1)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의사 확인 : 2025. 8.
- 2)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 동의서 제출 : 2025. 9.

라. 향후계획

- 1) 2026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 : 2025. 9.
- 2)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 2026. 1.
- 3) 취득재산 토지보상협의 매수 : 2026. 2.

마. 기대효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로 농업경영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② 거창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1. 제안이유

- 가. 수영 수요 대비 인프라 부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거점
돌봄 시설 필요, 군민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평생 학습 공간 부족
나. 수영장, 거점돌봄시설, 평생학습시설로 건립으로 전 군민이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교육·문화 복합시설 조성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 2)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11(거창초등학교 내)
- 3) 사업기간 : 2024. ~ 2029.
- 4) 사 업 비 : 29,846백만원(국비*14,923 군비 9,923 기금**5,000) 세부내역 붙임1)
*국(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기금(소멸대응기금기초계정)
- 5) 사업내용 : 수영장(25m 5레인), 거점돌봄시설, 평생학습시설 등 건립
- 사업규모 : 연면적 5,673m²(지하1층 ~ 지상5층), 건축면적 5,942m²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연면적				
계				5,673	23,098,000			
취득	건물	거창읍 중앙리 311 (거창초등학교 내)	학교 용지	5,673	23,098,000	2029	건물 신축	

*기준가격 산정 근거 : 건축비 + 철거비

- 건축비 : 3,945,823원×연면적 5,673.34m²=22,386,959,000원

*건축단가 : 2024년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건축공사비지수상승률(6.79%)참조

- 철거비 : 711,594,000원(24년 경남교육청 시설공사 예산 단가표 참고)

○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²)	비 고
계		5,673	
지하1층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324	
지상1층	수영장(25m 5레인), 조리실 겸 식당, 매점	1,378	
지상2층	돌봄교실(6실), 놀이공간, 사무실	876	
지상3층	동아리 및 방과후실(4실), 디지털실, 창의융합메이커실, 소·대강의실, 상담실	1,378	
지상4층	강의실(5실), 활동가실, 다목적 강당	1,378	
지상5층	카페, 옥상 녹화 공간	339	

다. 추진경과

- 1) 2024. 08.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 2) 2024. 10. ~ 2025. 9. :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추진 중)
- 3) 2024. 12. :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
- 4) 2025. 02. : 거창초 학교운영위원회 방문 설명
- 5) 2025. 03. : 교육부 사업계획 변경(수영장 반영)
- 6) 2025. 07.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7) 2025. 08. : 경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완료
- 8) 2025. 09. : 학교 사용 부지 협의 완료

라. 향후계획

- 1) 202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공유재산 심의
- 2) 2025. 10. ~ 12. : 설계 공모 추진
- 3) 2026. 01. ~ 12. : 실시설계 추진
- 4) 2027. 01. ~ 2029. 0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9. 3. : 운영(예정)

마. 기대효과

- 1) 공익적 목적의 개방형 수영장 운영으로 주민 건강, 복지 증진
- 2) 학생 돌봄 공백 해소, 성인들의 평생 학습 참여 기회 확대
교육·문화 복지 격차 해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① 가조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

- 본 계획안은 농업 인력난 해소 및 농가 경영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숙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임.
- 취득면적 1,674m², 총사업비 31억원 정도 소요되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 대상임.
- 총사업비 31억원은 부지매입, 건축공사, 부대공사 포함이며, 군비 부담이 있긴 하지만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기반 강화에 대한 투자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 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으나,
-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 확정 전에 의결 받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 공모 신청 시점에 부지 확보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모 선정 이후에 관리계획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② 거창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 본 계획안은 수영 인프라 부족에 따른 공공 수영장 필요, 맞벌이 가정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거점형 돌봄시설 수요 확대, 성인 대상 평생학습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육·문화 복지 격차 발생에 따라
- 수영장, 돌봄시설, 평생학습시설을 통합한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전 군민이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건축비는 2024년 공공건축물 단가 기준+공사비 지수 상승률(6.79%)를 반영하였으며, 철거비는 경남교육청 시설공사 단가표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 기준에 따른 단가 적용 및 지수 보정으로 적정성을 확보함.
 - 설계비는 총공사비의 4.59%(기본 요율+추가 요율)로 공공 발주사업 설계 대가 기준에 따랐으며 부가세 및 손해배상 보험료가 포함되었음.
 - 부대비1의 경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설계공모 및 구현비용을 각각 설계비의 10% 및 9.03%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음.

- 부대비2, 3 및 예비비의 경우 인증 수수료는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BF인증 등에 관한 비용이며, 예비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5% 수준으로 법적 기준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필수 비용을 반영하였음.
- 거창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복지 수요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키는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써, 정책적·사회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짐.
- 특히, 수영장, 돌봄시설, 평생학습공간을 통합한 복합시설은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비 및 기금 확보를 통해 재정적 부담도 분산되어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사업 시행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운영에 대한 세부 전략 수립이 병행되어야 하며
- 거창초등학교 부지 내 조성으로 중심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차량 진출입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방안과 주차장 확보 계획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0. 0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가. 제안이유

-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용보증 재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 주요내용

○ 출연 개요

- 1)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2)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 3) 사 업 비 : 450백만원(군비)
- 4)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출연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군비 45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음.
- 거창군은 도내 군 단위 중 소상공인 수 2위, 보증잔액 2위, 출연금 규모 2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 군 단위 소상공인 수 대비 출연금 비율을 보면 거창군은 소상공인 수 대비 출연금 비율이 군 단위 상위권에 해당하며, 우리군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의령, 함안, 창녕군이 다소 높게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낮음.
- 보증지원은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위함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책으로 검토됨.
-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금융 보증 확대는 군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며, 타 시군과의 협력 및 균형 있는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적절한 투자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출연안은 타당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10. 0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출연 개요

-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2) 대 상 :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1,638,584,000원
- 4)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11명, 기간제 4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출연안은 거창군의 문화예술 정책을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거창문화재단에 2026년도 군비 1,638,584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음.
- 세부사항 중 인건비 상승률 반영은 공공기관 운영의 일반적 추세이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연극제 전문인력 조정 등 재단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항목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약 15% 내외 증액 추세로, 운영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증액으로 보이며, 인건비와 경상경비 지원은 필수 운영비로써 낭비성 지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만큼 재단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거창문화재단은 2017년 1월 경남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재단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공연·전시 관람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 향유 기반 마련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임.
- 이에 따르는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재단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3.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0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가. 제안이유

-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취업 취약계층인 최종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하고,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업 :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 위탁참여인원 : 2명(예정)

- 위탁사무
 - 1)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2)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
- 위탁기간 : 2026. 3. 1. ~ 2029. 2. 28.(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격 : 거창군에 소재하며 아래 기준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사업은 경제활동 기회가 제한된 최종증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 고용이 아닌 권리 기반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본 사업은 단순 노무 제공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며,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 경상남도 조례 등 상위 법령과도 정책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수탁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 내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의 역량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더욱이 단순 고용이 아닌 권리 실현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11.03.)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9
4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5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6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7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8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35
9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39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10. 10.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일부 기준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1) 표고 :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6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 2) 평균경사도 :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일 것
- 3) 입목축적 :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거창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다목 1) · 3)에 따른 허가기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산림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

나) 예고결과 : 2025. 9. 24. ~ 10. 01.

3) 비용추계서 :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조례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기준을 10~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거창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에서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거창군 관내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완화기준 즉, 시행령 별표4에서 위임된 사항 중 다음과 같이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표고 기준: 산지의 표고의 60% 미만(기존 50%)
 - 평균경사도: 30도 이하(기존 25도)
 - 입목축적: 산림기본통계상 거창군 평균의 180% 이하(기존 150%)
- 본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20% 이내 범위에서 완화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음.
- 또한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촌 주거·생산 기반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는 주택, 농림업 부대시설, 소규모 창업시설 등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향후 산지전용허가 심사 시 환경적 안전성 및 재해위험 관리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10. 10.

나. 발 의 자 :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흥희 의원)

- 폐기물처리업 등 자원순환시설은 미세먼지, 악취, 소음 및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활환경 보장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군 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 이격거리 신설 (안 제20조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9. 29. ~ 10. 0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거창군 계획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환경 보장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 제20조 제4항을 신설하여 ‘아래 표’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주거밀집지역(반경 150m 이내 5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대지경계선 기준 7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2에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은 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한 이격거리 설정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항은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주민의 환경 민원과 직결되므로, 입지 기준 강화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타 지자체들의 이격거리를 살펴볼 때 이격거리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10. 2.

나. 발 의 자 :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신재화,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신재화 의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22.6.10)
및 시행('22.12.11)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예방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마. 예방·지원사업(안 제6조)
- 바. 예방교육(안 제7조)
- 사.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조의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농업축산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09. 24.~10. 0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 5) 참고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거창군 농어업인의 생명·신체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예방 지원사업을, 제7조에서 예방교육을,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을,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및 사업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 가능한 사항이며 제8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요건에 해당되어 재정지원 가능한 사항임.
- 또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법률위임이 불요하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 거창군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로 밭과 과수원 등이 경사지에 위치하여 비탈진 농로나 협소한 진입로로 인해 농기계 전도, 추락, 낙상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또한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로, 사다리·고소작업·운반작업이 많고 65세 이상 농업인의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음.
 - 영세·소규모 농가 비율 높아 안전장비, 보험가입,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함.
 - 농기계 임대를 통한 작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농기계 사용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위험 상승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확대, 마을단위 안전교육 및 점검 철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고령농 대상의 맞춤형 안전보조기기 보급 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에 철저가 요구되며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가 명확하고 농어업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10. 2.

나. 발 의 자 :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최준규,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준규 의원)

- 거창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처분하는 농기계는 사용 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음. 하지만, 지금까지 거창군은 입찰을 통해서만 매각을 진행해 거창 주민들은 구매하기 어려운 만큼, 처분하는 농기계를 거창 주민들에게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거창 농업인에게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농업소득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9. 29. ~ 10. 0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조항에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함.

- 거창군에서는 불용농기계에 대해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홍보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한 농민의 불평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 매각할 농기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기계명, 규격, 사용연수, 사진, 예정가격 등) 전달이 필요하며
- 매각 공고 시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알림, SNS 활용, 농업인 단체를 통한 안내자료 배포, 회의나 교육 시 공지, 마을이장단 회의 시 안내, 읍·면사무소 현수막, 안내문, 리플릿 등을 통한 홍보, 임대사업소 내 불용농기계 전시코너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으로 매각 농기계가 필요한 농민이 정보부족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다만, 상위법령 조항을 중복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효율적인 자산 처분과 지역농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에 재기재하려는 것으로 필수적인 조항임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0.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 라. 상정일자 :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개선하여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법령에 정한 기한으로 정비함(안 제10조)
 - 1) 현행 : 해당 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 이내
 - 2) 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 나. 인용 법령·조례의 개정사항 정비함(안 제3조·제7조·제16조·제17조)

다. 법령 재기재 조항 삭제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29조
-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24. 11.) 반영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9. 5.~9. 2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 11.)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변경하여 신고기한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보면 공사에 따라 1년~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 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기존 조례에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기한으로 인한 소극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을 해소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 사 별	세 부 공 종 별	책임 기간
1. 교 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 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 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 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 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15. 전문공사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 분	1년
	①실내건축	1년
	②토 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 수	3년
	⑤도 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 붕	3년
	⑨판 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 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 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보 링	1년
	⑱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온실설치	2년

비 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그 밖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재기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0.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 라. 상정일자 :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거창사건사업소장)

-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 명칭을 현행화함(안 제12조)
- 나. 묘역 등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 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21,000천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9. 11.~9. 2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거창사건희생자 합동묘역 내 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족 및 방문객에 대한 예우 강화, 거창사건의 역사적 의미 확산, 추모문화 조성 등 행정, 정책적인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핵심 신설조항은 제17조(기념품 등 지원)로 군수는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유족합동묘역 관리비용의 지원 근거가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28조에 따라 묘지 및 봉안시설 관리, 문화·추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기부·보조를 할 수 있는 요건 중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것’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으로 법적 지출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개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예산확보액이 2025년도에 2,100만원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출로서 비용추계서 생략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안전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0. 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①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위한 고속도로 유희부지 매입

1. 제안이유

가.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도심 지역에서는 폭염, 열섬현상, 미세먼지 농도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책으로 자연기반해법의 일환으로 도심숲 조성이 강조되고 있음.

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심 내 유희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창군은 이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유희부지를 매입해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녹지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25. 9. ~ 2028. 12.
- 2) 위 치
 - 건계정→거열산성진입도로→남하면→창포원(11km)
 - 건계정→국도24호선→마중길→국농소→창포원(7km)
 - 하천생성숲(건계정→위천→황강→남하면→창포원)(5km)
 - 거창창포원 내
- 3) 사업내용 : 가로연결숲 18km, 하천생성숲 5km, 거창창포원 바람길
브릿지 조성 등
- 4) 사 업 비 : 15,000백만원(국비 7,500 도 2,250 군 5,250)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2026년				2027년 이후	비고
	계	국(지특)	도	군		
15,000	1,000	500	150	350	14,000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5,834	528,855			
취득	토지	대평리 60-1번지	잡	15,834	528,855	2026. 1.	도시숲사업 활용	

※ 기준가격 : 공시지가(33,400원/m²)×면적

다. 추진경과

- 1) 2024. 10. :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청 방문
- 2) 2025. 2. ~ 7. : 기후변화 대응 도시바람길 숲 조성방향 수립 용역 완료
- 3) 2025. 3. 18. : 한국도로공사 부지 매도의향 조사
- 4) 2025. 4. 2. : 고속도로 유희부지 매수의향 검토 보고
- 5) 2025. 4. 17. : 매도 의향 공문 발송
- 6) 2025. 8. : 군 지방재정영향평가 승인
- 7) 2025. 9. : 2026년 국비(지특) 5억 확보

라. 향후계획

- 1) 2025. 9. : 경남도 지방투자심사 의뢰
- 2) 2025. 10. : 한국도로공사 매매계약 사전협의
- 3) 2025. 10. : 거창군 도시바람길 숲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4) 2026. 1. :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지매입

- 5) 2026. 5. :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6) 2026. 6. :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7) 2026.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8) 2026. 12. : 공사 착공
- 9) 2028.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1) 숲 및 경관 녹지 조성을 통해 ‘청정거창’ 이미지 강화 및 고속도로 이용자 대상 시각적 홍보 효과로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 2) 도심 유입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대응 도시숲 기능 수행 바람길 숲 조성 등 친환경 사업의 연계 기반 마련
- 3) 주기장, 어린이 체육시설, 체험장 등 주민편의시설로의 활용 가능 및 타 부서 다기능 부지 활용 가능 등 중장기 도시계획 대응 용이, 공공 목적에 맞는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 마련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1] 참조

4. 사업방향 및 타 지자체 조성사례 : [붙임2] 참조

5.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 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도시바람숲길 사업을 위한 고속도로 유희부지 매입 건은

- 2025년 9월 지특사업 확정으로 150억원(국75억, 도22억 5,000천만, 군52억 5,000만)의 사업비로 2025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도시바람숲길을 조성하게 됨에 따라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유희부지에 도시바람숲길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으로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숲을 통해 도심과 도시 외곽을 바람길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시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찬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여 폭염과 미세먼지를 완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바람길숲의 정의 및 유형 : 바람생성숲 -> 연결숲 -> 디딤 확산숲]

- 바람길 숲은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찬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숲’을 의미함.
- 산림청에서는 바람길숲의 유형을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바람생성숲

- 찬공기가 생성되는 도시 외곽 및 도시 내부의 경사도가 높은 대규모 산림

등으로 생성된 찬공기가 잘 순환되고 이동될 수 있도록 임연부(숲의 가장자리)의 산림구조 개선, 시가지 가까이에 훼손된 산림은 우선적으로 복원.

- 찬공기 생성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한 숲을 만들어 식생 활력도를 높임.

- 연결숲

- 바람생성숲에서 만들어진 찬공기가 도심 내부까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및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녹지를 의미하며, 외곽 산림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하천, 도로 및 가로를 활용하여 바람의 이동통로 조성.

- 디딤·확산숲

- 도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숲과 녹지, 유휴지를 대상으로 하며, 도심 내 대규모 유휴지 및 도시재생 사업지, 기존 녹지 등을 활용함.
- 생성숲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되는 데 도움을 주며, 경사가 있는 대규모 디딤·확산숲의 경우 도심 내부에서 소규모 생성숲 역할을 하기도 함.
- 고밀 도심의 경우 다양한 녹화기법을 활용하여 도시바람길숲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직숲, 녹색주차장, 담장허물기 등

※출처 : 엄정희 등(경북대 산림학과조경학부 교수 등) (2022) 도시바람길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 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창군 도시바람길숲 조성방향 수립 용역(25.7.) P9.~10.

○ 본 계획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평리 60-1번지, 15,834㎡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로서 도시숲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임.(거창읍 농경지 : 디딤·확산숲, 연결숲 조성)

○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5년 2월에서 7월사이 기후변화 대응 도시바람길 숲 조성방향 수립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예산과목을 살펴보면 도시건축과>도시관리>도시개발>소규모 도로 관리>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예산의 전용(변경)제한 규정을 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으로 나와 있고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도시바람길숲 조성방향 수립용역비는 전용(변경)제한 규정 두 가지를 다 어긴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함에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변경)하여 사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15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임에도 사업이 확정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와 의원들의 의견반영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회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은 본 사업의 일부분인 세부사업을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모순된 상황을 발생하게 했음.

- 취득재산은 도시숲사업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있으나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인 코아루 아파트로부터 도보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주변이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또한 500~600미터 이내에 양향제 생태습지원과 거창생태공원, 심소정, 강변산책로 등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이 존재하고 있어 도시숲 조성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검토되는 바 설명이 필요함.

- 도심 기후 대응,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도심 내 녹화를 통한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도시 생태계 조성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취득재산의 심사에 있어 효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아울러, 도시 바람길숲 사업은 거창읍 도심지 사업의 비중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참고적으로, 도시 바람길숲 사업은 산림청 주도로 2019년 ~ 2022년 1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 26개 도시에서 시행되었고 경남지역에는 양산시와 김해시가 사업추진됨. 2025년에는 전국 20곳이 추진중에 있음.
- 해외 사례로는, ‘바람길’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자동차 산업도시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1930년대 공해도시로 높은 악명에서 벗어나고자, 194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 연구를 시작함.
- 슈투트가르트는 도시계획부터 바람길을 고려하고 이를 녹지 계획에 반영해 오염물질을 저감시킨 대표적인 사례임. 슈투트가르트는 도시 전체 면적의 60% 가량을 녹지로 조성하여 바람길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열섬 완화 효과를 입증했다.

- 산림청에서는 2020.4.~11.까지 도시바람길숲의 조성원리와 제도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본격적인 연구와 시범 사업을 거쳐 추진되고 있고 학계에서는 경북대학교, 서울시립대 등에서 대구, 대전 등의 실제 사업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중에 있어 아직 학문적이고 현장 적용사례에 대하여 좀 더 실증적인 사례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 특히, 거창군은 산림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조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효과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이 필요함. 따라서, 찬공기 발생 및 유동 흐름 특성 분석, 미세먼지 및 폭염발생 지역 분석 등을 통한 찬공기와 바람길의 정량적인 지표와 연속성 등을 파악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위한 고속도로 유희부지 매입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의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0. 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0.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 2)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2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260	240	240	220	280

※ 2025년 출연금 220백만원(2025년 대비 60백만원 증액)

4)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인건비) : 220백만원
- 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운영 장비 구입 : 30백만원
- 거창석재산업 홍보사업 : 30백만원

나. 예산지원 사유

-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기업애로해소, 공인시험서비스 제공, 대내외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험·검사 장비 구입, 그리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거창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임

다. 2026년 화강석 연구센터 주요사업

- 1) 거창화강석 홍보사업 추진(2026년 핵심사업)
- 2)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
- 3)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

4. 참고사항

가. 출연 기관 운영현황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따라 출연코자 하는 것임.

- 출연 예정금액은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원 증액하여 요구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장비구입에 3,000만원, 홍보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장비구입의 경우 2012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화에 따른 교체이며 홍보사업은 2026년 핵심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거창석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거창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출연 동의 시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
- 25년도 출연금은 2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에 소요되었으며 자체 인건비 예산을 포함하면 3억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의회에서는 매년 출연안 심의 시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25년도 8월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1억 5,650만원으로 25년도 성과목표인 2억 8,000만원 목표 대비 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기업지원 실적도 석재 시험분석 지원 600건 성과목표에 8월말 현재 359건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적 향상이 요구되며
- 2007년에 설립되어 18년이 경과하였으나 경영자립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임.
- 다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기능석 석재개발과 거창화강석 브랜드 강화라는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거창화강석 산업과

관련하여 여러 기업지원 업무, 거창화강석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 조경석 매출액을 200억까지 끌어 올리는 등 거창석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0. 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가. 거창 임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 거창 임업대학

나. 위탁사무

- 1) 거창군 임업대학 교과목 설계 및 세부일정 수립
- 2) 교육교재 제작 배부 및 강사 섭외·관리
- 3) 교육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 4) 교육 후 교육완료 보고서 제출
- 5) 현장실습 및 평가 진행 등

다. 위탁기간 : 2026. 3. ~ 12.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임업경영과 관련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거창 미래임업을 선도할 임업인재 리더 육성 및 선진 임업경영을 위한 경쟁력확보

나. 관계법령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 2)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 제4조(책무) 및 제5조(재정지원)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10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1월
-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6. 2월
- 4)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3월 중
- 5) 임업대학 입학생 모집 : 2026. 4월
- 6) 임업대학 운영 : 2026. 5월 ~ 10월
- 7)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 2026. 11월 ~ 12월

라. 소요예산(2026년 기준) : 30백만원(군비)

마. 위탁운영계획 : 따로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거창 임업대학을 개설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보면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과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본 사업은 임업 전문경영 기술, 현장중심, 선진사례 습득 등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임업인 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임
- 민간위탁의 적정 여부를 살펴보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의한 민간 위탁 대상 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임업대학 운영은 임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에서는 임업인을 위한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업대학 운영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농업기술 센터가 있어 지역에 특화된 경영·기술지도 등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임업은 임업진흥원이나 지역 산림조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지도의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업인들의 기술지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업대학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군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산림청에서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이나 임업대학 운영의 필요성,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해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